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2019. 7. 23.)

검 토 보 고 서

순서	검 토 안 건	부서명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90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7월 15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7월 16일(화)

2. 제출사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성(안 제3조) (개정)
 - 지역대표 ⇒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나. 입법예고: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다.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라.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 마.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있음
 -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함.
- 바.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 7. 9.)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91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7월 15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7월 16일(화)

2. 제출사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조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구성 규정 개정(안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 근거 마련

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간사(안 제4조~제8조) 및 수당 등(안 제11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 위원회의 운영 등)

나. 입법예고: 2019. 6. 7. ~ 6. 27.(제출된 의견 없음)

- 다.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라.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 마.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바.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 7. 9.)

Ⅲ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하여 구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로 합리적인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기타 개정안은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삭제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